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3호

2.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외 29명

3. 발의일자 : 2018. 8. 16.

4. 회부일자 : 2018. 8. 21.

Ⅱ.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 학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법정 시수 이외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Ⅲ. 주요내용

- 1.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8호).
- 2.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시간을 법정 시수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Ⅳ.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안건 참고).
- 3. 기 타

입법예고(2018.8.24~8.31):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황인구 의원 외 2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3호로 발의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화재를 비롯하여 폭발, 붕괴, 각종 테러사고 등의 사회재난과 홍수, 태풍, 지진, 대설, 한파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교육안전의 범위 중 재난안전을 규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시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재난안전교육의 법령체계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 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 ④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 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조는²⁾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장에게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제5조는 교육 안전의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상위법령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 홍 수, 태풍, 지진, 대설, 한파 등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학교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였는바, 개정취지 면에서 타당한 입법적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문별 검토

○ 먼저 안 제5조제8호는 교육안전의 범위에 교육활동 중의 홍수·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 등 사회재난을 추가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상위 법령과 교육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 7대 표 준안'(교육부, 2016.3), 그리고 '2018년 학교 안전교육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2018.4)상에 제시된 재난안전교육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 ⑤ (생략)

^{2)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또한 안 제11조제6항은 법령으로 정한 안전교육 시간 외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에 따라 하위 규범체계인 조례를 정비하여 규범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책·안전기획관-8093, 2018.8.24.).

³⁾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 안전교육 관련 예산 내역은 [별첨] 참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관련 기준>

○ 초 1,2학년

- '안전한 생활' 교재 64차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
- 4대 영역 (생활, 교통, 신변, 재난 안전)에서 체험중심 활동

○ 유·초·중·고 학생

- 연간 51차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 각 학교급별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참고
- :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및 신변안전, 재난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영역
- 유치원은 교육활동, 나머지 학교급들은 차시로 해석
- 최소 수업시수 인정 단위
- 교육과정(교과 + 창의적체험활동) : 초등10분, 중고등 15분
- 교육과정외(조회, 종례등) : 초등10분, 중고등15분 최소 5일 연속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7	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인전교육	和林島
	유 치 원	13	10	8	10	6	2	2
교육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시 간	중 학 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	!수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3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1회 이 상	학기당 1회 이상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47호, 2016. 2. 3., 일부개정]

-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5.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② 삭제 <2015. 1. 20.>
 -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
- 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4. 20.]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타법개정]

-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② 삭제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 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도로교통법」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3.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21.] [교육부고시 제2017-121호, 2017.4.21., 일부개정]

-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 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 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단체 소속 직원
-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 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	·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名林品
	유 치 원	13	10	8	10	6	2	2
교육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시 간	중 학 교	10	10	10	10	6	3	2
	구능학료	10	10	10	10	6	3	2
횟	수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3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2회 이 상	학 기 당 1회 이 상	학기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 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01 E -:			
구	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1. 교실, 가정, 등 하굣길에서 안 전하게 생활 하기	1. 표지판 및 신호 등의 의미 등 교 통안전 규칙 알 고 자키기	1. 내몸의 소중함 과 정확한 명 칭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1. 일터 안전의 중요 성 및 안전을 위 해 자카야 할 일 알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 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 은 느낌 알기	2 생활주변의 해 로운 약물.화학 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119신고와 주 변에 알리기
	유 치 원	3. 놀이기구나 놀 잇감, 도구의 바 른 사용법을 알 고 안전하게 사 용하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3. T.V, 인터넷, 통 신기기(스마트 폰 등) 등의 중 독 위해성을 알 고 바르게 사용 하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 게 대처하는 방 법 알기		3. 손씻기와 소득 하기 등 청결 유지 하기
		4. 실종, 유괴, 미 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 하기	4. 나와 내 주변사 람(기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4. 각종 재난 유형 별 대비 훈련 실시		4. 상황별 응급차기 방법 알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음식알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교 육 내 용		1. 인전에 교실 7정 공공사설이용하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1. 학교폭력의 여방 및대사법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 바른 약물 복 용법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 고, 전파요령 알기	1. 일터에서 발생 하는 산업 재 해를 알기	1. 응급처치의 상 황, 의미, 중요 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학 생품 설이 연한 사용 및 식 품 연단 일기	2. 교통수단(자전 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 법일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초	3. 실험실습 시 안전 에 유의하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 처방안 알기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 성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등 학 교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이외 활동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 급처치 알기
		5. 유예 마시고 예라(해		5. 이동하다의 유형 및대체안일기		5. 각종 재난 유형 별 대비 훈련 실시		
				6 기존폭리 개념화 대치만일기				
				7. 재살에방 및 생명 종조교육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 티켓 알기	1. 이륜차의 안전 한 이용과 점 검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 과 현황 및 위험 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 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 안전 문 화의 필요성	1.응급처치의 상 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성 하 대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 관 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 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사방법 알 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 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 례별 발생 현 황 이해하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 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지살예방 및 스트 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 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 과 안전한 행 동 알기	3. 안전장비의 올 바른 사용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 하기		4. 가족과 왈비른 의 사산통방법과 가정 폭력 피해자 자원 제도 알기이동학 대 포함)	4. 스마트폰의 건 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성폭력 대차예방 및 대처법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 별 대비 훈련 실시		
				6. 성매ル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재살에방및생명존 중교육				
		1. 기호식품의 특성 유해성 및 전기전 자제품의 인전한 사용 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 한 이용과 점검 방법 알기	1.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함성 인 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 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 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 안 알기	1.응급처치의 상 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 른 사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 별 신고대처방 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 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작업장의 안전 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구 등 하 급	 체육 및 여가 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 용 규칙 만들 기 및 실천		3. 산업 재해의 의 미유형과 시례별 발생 현황 이해 키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 하기		4. 성매매의 위험 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5. 자신과 타인(가 족 포함)의 소중 함 인식하기		5. 각종 재난 유형 별 대비 훈련 실시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 호하기(아동학 대 포함)				
				7. ဃ배및썡 쬱썍				
1		1 한생 박닥 수주은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	1위 선명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교육 방법

2018년도 안전교육 예산과 집행내역

1. 2018년 안전교육 예산 총괄

(단위:천원)

예산액	7,283,251
집행액	6,036,552

2. 세부내역

(단위:천원)

		1101.1101	011 11 011	TI +11 011	(단위:선원)
년도	사업명	사업내역	예산액	집행액	소관
	안전교육확대	학생안전매뉴얼보완및 제작보급	38,200	-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교육확대	학생안전체험교육비	1,873,000	1,849,000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교육확대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	39,000	39,000	정책안전기획관
	자율적학교안전교육문화조성	안전교육자료개발	30,000	30,000	정책안전기획관
	퇴직교원인생이모작사업	안전관리서포터교구구입	20,000	11,562	정책안전기획관
	안전체험관건립	교실형안전체험시설확충	500,000	500,000	정책안전기획관
	안전체험센터운영지원	보라매안전체험관	350,000	350,000	정책안전기획관
	안전체험센터운영지원	광나루안전체험관	350,000	350,000	정책안전기획관
	안전체험센터운영지원	송파안전체험관	200,000	200,000	정책안전기획관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과)	안전강사 활동비	19,200	8,040	유아교육진흥원
	2018 교원연수운영(기획연구과)	2018 교원연수운영 (직무,자율연수)	3,872	590	유아교육진흥원
	학교기타운영비	초등수영교육지원	2,998,920	2,366,753	체육건강과
	학생수련활동지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	71,025	71,025	체육건강과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18,000	4,880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	교육과정 연수 운영	42,970	35,327	유아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안전인프라구축 (소규모안전체험관건립지원)	400,000	-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수련시설안전점검	8,000	-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수련교육요원 안전연수	3,700	3,760	학생교육원
2018	학생수련활동지원	해양수련교육직무연수 (안전요원연수 포함)	16,937	8,455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종합수련교육직무연수 (안전요원연수 포함)	26,612	24,347	학생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소집단수련교육직무연수 (안전요원연수 포함)	12,345	-	학생교육원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스노클링) 교육 지원	200,000	154,522	학생체육관
		2018 초등 안전생활교육 직무연수(협력학교 4과정)	10,140	40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2018 초등 수영 및 생존수영교육 직무연수(1기,2기)	4,995	-	교육연수원
	중등 안전생활교육 직무연수	학교안전사고사례및대처방안 재난안전현장체험 현장체험학습안전사고사례공유 와예방및대처방안	5,580	2,380	교육연수원
	중등학교 경영자 안전 직무연수	학교경영자의안전문제에대한일 반적의식함양 학교경영자의안전문제에대한구 체적현황인식및체험	4,280	1,976	교육연수원
	TH-7000400	안전한 학교시설관리 실무능력향상(5과정)	17,365	17,365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학교시설안전관리자(2과정)	15,325	3,766	교육연수원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	3,785	3,764	교육연수원